

#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9,772,093	20,393,163
일반회계	597,323,606	17,919,708
특별회계	82,448,487	2,473,455
공기업특별회계	68,305,468	2,049,16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545,814	946,37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759,654	1,102,790
기타특별회계	14,143,019	424,291
지하수특별회계	678,250	20,348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1,664,058	49,922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1,836,189	55,086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4,000,000	120,000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5,964,522	178,93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09,22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